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41호 2021. 10. 8(금)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1-1924호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 남원시 공고 제2021-1926호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 남원시 공고 제2021-1932호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8
- 남원시 공고 제2021-1934호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문 ----- 29
- 남원시 공고 제2021-1941호 도로지정공고 ----- 39
- 남원시 공고 제2021-1942호 남원시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문 ----- 40
- 남원시 공고 제2021-1947호 남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51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공고 제2021 - 1924호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 개정이유**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고 대비 등 내용상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 민원처리 이의신청 시 통지기간 규정을 「민원처리법」 제35조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난, 질병, 사고 발생으로 장래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안 제3조제2호)
- 나.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항목 추가(안 제5조제8호)
- 다. 민원처리 이의신청 시 통지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안 제7조)

3. 입법예고기간 : 2021. 10. 5. ~ 2021. 10. 25.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jmb6908@korea.kr), fax(063-620-6331)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3-620-6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복지과장

1. 개정이유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고 대비 등 내용상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 민원처리 이의신청 시 통지기간 규정을 「민원처리법」 제35조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난, 질병, 사고 발생으로 장래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안 제3조제2호)
- 나.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항목 추가(안 제5조제8호)
- 다. 민원처리 이의신청 시 통지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0. . ~ 2021. 10. .(20일간) *초일 불산입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생계유지”를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생계유지”로 한다.

제5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험료

제7조 후단 중 “14일”을 “1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른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u>14일</u>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 ----- ----- ----- ----- <u>10일</u> ----- -----.</p>

붙임

관련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운영)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소득 보장)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민간의 참여)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2.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 「민원처리법」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1 - 1926호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 개정이유**

남원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제안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용품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용품 등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3. 입법예고기간 : 2021. 10. 5. ~ 2021. 10. 25.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교통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pk1398@korea.kr), fax(063-620-6718)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교통과 교통행정팀(☎063-620-6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교 통 과 장

1. 개정이유

남원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제안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용품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용품 등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0. 5. ~ 2021. 10. 25. (20일간) *초일 불산입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홍보)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7조(홍보) ① ----- ----- ----- ----- ----- -----.</p> <p>② <u>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u></p>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붙임 **관련법령**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공고 제2021 - 1932호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지관 이용료, 위탁 취소 규정을 보완하고, 지도·감독 조항 신설하며, 개관 예정인 동부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별표에 추가하여 노인복지관 운영·관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노인여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복지관이용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6조)
- 나. 위탁취소 등 규정 명확화(안 제13조)
- 다. 수탁자 시설운영 지도·감독 근거 마련(안 제14조)
- 라. 신규 개관 노인복지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별표1)

3. 입법예고기간 : 2021. 10. 05. ~ 2021. 10. 25.(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노인장애인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redgress@korea.kr), fax(063-620-6769)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계(☎063-620-6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6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이용료) 복지관은 시설 이용자에게 실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일 때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13조(위탁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1. 계약 체결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는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에 대해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 제2항 단서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

회”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달리”를 “다르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취소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는 남원시에 귀속한다.

제15조(중전의 제13조)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는”으로 한다.

별표 1 위치란 중 “50”을 “50(금동)”으로 하고, 같은 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남원동부노인복지관	남원시 요천로 1834(도통동)	
-----------	-------------------	--

별표 2 제목 중 “(제7조 관련)”을 “(제8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제목 중 “(제8조 관련)”을 “(제9조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복지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한 복지관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약된 노인복지관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별표 1]<개정 2018. 4. 6.>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남원노인복지관	남원시 금동로 50(금동)	
남원동부노인복지관	남원시 요천로 1834(도통동)	

[별표 2]

복지관 시설 이용시간(제8조 관련)

구 분		시 간	비 고
하절기 (3월 ~ 10월)	평 일	09:00 ~ 18:00	※ 공휴일은 휴무
	토요일	09:00 ~ 13:00	
동절기 (11월 ~ 2월)	평 일	09:00 ~ 17:00	
	토요일	09:00 ~ 13:00	

[별표 3] <개정 2018. 4. 6>

시 설 사 용 료(제9조 관련)

시 설 명	기 준	요 금	초과사용료	비 고
대강당	오전(08:00~12:00) 1회당 오후(13:00~17:00) 1회당 야간(18:00~22:00) 1회당	50,000원	10,000원/시간	1회기준 4시간 이내
냉·난방 시설	1회	30,000원	5,000원/시간	1회기준 4시간 이내
강당 부대기자재	1회	50,000원		마이크, 빔프로젝트, 음향, 조명 등
중강당	오전(08:00~13:00) 1회당 오후(13:00~18:00) 1회당	50,000원		1회기준 5시간이내 (냉·난방/부대기자재 포함)
기타 프로그램실	오전(08:00~13:00) 1회당 오후(13:00~18:00) 1회당	30,000원		1회기준 5시간이내 (냉·난방/부대기자재 포함)

※ 공휴일과 토요일 오후의 사용은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u>제6조(이용료) 복지관은 시설 이용자에게 실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일 때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u></p>
<p><u>제6조 ~ 제8조 (생략)</u></p>	<p><u>제7조 ~ 제9조 (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u></p>
<p><u>제9조(운영 및 위탁) ① (생략)</u></p> <p>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u>선정심의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u>제10조(운영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u></p> <p>② ----- -----. ----- ----- ----- <u>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u> ----- -----.</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10조·제11조 (생략)</u></p>	<p><u>제11조·제12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u></p>
<p><u><신 설></u></p>	<p><u>제13조(위탁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u></p>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12조(위탁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8.4.</p>	<p><u>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8.4.6.]</u></p> <p><u>1. 계약 체결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u></p> <p><u>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u></p> <p><u>3. 그 밖에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때</u></p> <p><u>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 시설 및 장비는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u></p> <p><u>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에 대해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u></p> <p><u><삭 제></u></p>

붙임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의 서비스 환경,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평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비용의 징수)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밖에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 공고 제2021 - 1934호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문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7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운영 중인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복싱)에 감독의 부재 및 원활한 대외활동 등을 고려하여, 감독 외 지도자(코치) 채용을 통해 전문적인 훈련 및 체계적인 선수 관리를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함.

2. 주요내용

- 가.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구성 변경(안 제3조~제4조)
- 나.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코치의 자격 신설(안 제5조)

3. **입법예고기간** : 2021. 10. 7. ~ 2021. 10. 27.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교육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우편번호 : 55738
- (2) 주 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교육체육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남원시 홈페이지 (<http://www.namwon.go.kr/>), 직접 방문, 전화, 팩스(063-620-6708)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교육체육과(☎063-620-5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 임** :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09.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교육체육과장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 중인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복싱)에 감독의 부재 등을 고려하여, 감독 외 지도자(코치)를 채용하여 전문적인 훈련 및 체계적인 선수 관리를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구성 변경(안 제3조~제4조)

나.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코치의 자격 신설(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0. 7. ~ 2021. 10. 27. (20일간) *초일 불산입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단원은 지도자와 선수로 구분하고, 지도자는 감독과 코치로 구성한다.

제4조제3항 중 “감독은”을 “지도자는”으로 한다.

제5조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2호) 가목 중 “규모이상”을 “규모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코치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2급 이상의 해당 종목 스포츠지도자 자격증 가진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선수단의 구성) ①·② (생략)</p> <p>③ 단원은 감독과 선수로 구분한다.</p> <p>④ (생략)</p>	<p>제3조(선수단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단원은 지도자와 선수로 구분하고, 지도자는 감독과 코치로 구성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② (생략)</p> <p>③ 감독은 선수의 발굴 및 육성 지도, 선수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사항, 선수 합숙소 관리 사항, 선수관리 상황 보고 등 소속 선수의 관리를 총괄한다.</p>	<p>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지도자는 ----- ----- ----- ----- -----.</p>
<p>제5조(단원의 자격)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단원의 채용 시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감독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2급 이상의 해당 종목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의 지도자 경력이 있는 사람</p> <p><신설></p>	<p>제5조(단원의 자격)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코치 : 「국민체육진흥법 시</p>

현 행	개 정 안
<p>2. 선수</p> <p>가. 최근 3년 이내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전국 <u>규모이상</u> 대회에서 상위(1, 2, 3위)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p> <p>나. (생략)</p>	<p><u>행정」 제9조에 따른 2급 이상의 해당 종목 스포츠지도자 자격증 가진 사람</u></p> <p>3. ---</p> <p>가. ----- ----- ----- <u>규모 이상</u> ----- ----- -----</p> <p>나. (현행과 같음)</p>

붙임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스포츠지도사) ① 스포츠지도사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별표 1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③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본다. <개정 2017. 8. 16.>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령에 그 수업연한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본다. <신설 2017. 8. 16.>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년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년

⑤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별표 1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8. 16.>

⑥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8. 16.>

[전문개정 2014. 7. 7.]

남원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남원시 공고 제 2021 -1941호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2021-2 5	남원시 노암동 517-10(대), 515-3(대), 515-8(대), 516-2(대), 517-1(대)	방*표	2021-건축과- 신축허가-107	53	1.2	50	노암동 517-10	13	방*표
							노암동 517-1	19	방*표
							노암동 516-2	18	방*표

남원시 공고 제2021 - 1942호

남원시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문

「남원시 체육진흥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7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 개정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나. 기능, 구성, 임기 및 위원 관련(안 제11조~제14조)
- 다. 회장의 직무, 회의 시행세칙 등 (안 제15조~제21조)

3. 입법예고기간 : 2021. 10. 7. ~ 2021. 10. 27.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교육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우편번호 : 55738
- (2) 주 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교육체육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남원시 홈페이지 (<http://www.namwon.go.kr/>), 직접 방문, 전화, 팩스(063-620-6708)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교육체육과(☎063-620-5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 임 : 남원시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 10.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교육체육과

장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 개정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나. 기능, 구성, 임기 및 위원 관련(안 제11조~제14조)
- 다. 회장의 직무, 회의 시행세칙 등 (안 제15조~제2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0. 7. ~ 10. 27. (20일간) *초일 불산입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 3) 규제예비심사 :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제1장 체육진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남원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 “체육동호인조직”, “체육단체”, “경기단체” 등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체육·생활체육·학교체육 활

동(이하 “체육활동”이라 한다)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대회유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체육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육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춘향골체육공원 등 각종 체육시설에 국내·외 우수경기와 전지훈련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유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육단체나 경기단체에 유치에 필요한 업무의 추진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회유치 및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체육 지원)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대회 참가
3.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를 통한 스포츠산업 육성
5.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체육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지원
8.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스포츠클럽(“회원의 정기적인 체

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체육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행사의 개최와 대회 참가
3.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포상) ① 시장은 남원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 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 정책 결정시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남원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남원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체육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2. 국제체육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 남원시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체육 업무 담당국장, 시 교육지원청 체육 업무 담당과장, 시 체육회 사무국장, 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3. 관계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4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않고 심의·의결에 참여한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연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 본인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

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과 부회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위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17조(간사 등)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이 된다.

제1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

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고 제2021-1947호

『남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7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3조)
- 나. 의견제출 방법, 제외대상, 보완요구에 대한 규정 (안 제4조~안 제6조)
- 다. 규칙의견 검토위원회 구성, 의견제출 검토 및 반영, 차별대우의 금지, 비밀준수의 의무 등 (안 제7조~안 제11조)

3. 입법예고기간 : 2021. 10. 7. ~ 2021. 10. 28.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1년 10월 28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감사실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wldus3787@korea.kr), fax(063-620-6781)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063-620-60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10.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감 사 실 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3조)
- 나. 의견제출 방법, 제외대상, 보완요구에 대한 규정 (안 제4조~안 제6조)
- 다. 규칙의견 검토위원회 구성, 의견제출 검토 및 반영, 차별대우의 금지, 비밀 준수 의무 등 (안 제7조~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0. . ~ 2021. 10. . (20일간) *초일 불산입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추계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규칙의견 검토위원회) 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칙의견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8조(의견제출 검토)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9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